

동작구의회공고 제2020-5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학생의 첫 출발을 응원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 간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입학준비금’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나. 지원대상 규정: 동작구 내 주민등록, 중·고등학생 등 1학년(안 제4조)
- 다. 입학준비금 신청 및 지원(안 제6조)
- 라. 지원대상자가 아니거나 부정한 방법 등의 경우 입학준비금 환수조치(안 제7조)
- 마. 서울특별시 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사업의 경우 조례 적용 제외(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 단체복 및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외국인 등록을 포함한다)을 둔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중·고등학교 과정) 및 각종학교(중·고등학제) 등의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제5조(지원금액)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입학준비 대상 품목의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원대상의 입학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제3항에 따른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